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3. 29(일)

##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호주·싱가포르·EU·중국·영국·캐나다 등 66개국 참여
- 디지털무역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추진
- 전자상거래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도 병행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지난 '19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4년 7월에 협정문을 타결했으며(91개국 참여), 이후 참여국들은 동 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일부 국가의 법적 편입 반대로 인해 법적 편입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아 공동의장국(일본·호주·싱가포르)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방안도 검토해 왔다.

3월 28일(토), 공동의장국 및 우리나라, EU, 영국, 캐나다 등 50여개 회원국의 통상장관 및 대표단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원활화, 소비자·기업 등 디지털교역 환경 신뢰 구축 등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동 선언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디지털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담당자	사무관	송승희 (044-203-4885)
	다자통상법무관 세계 무역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주실 (044-203-5920)
		담당자	수석전문관	이충녕 (044-203-5921)



- (개요) 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으로 ▲ 전자상거래 원활화, ▲ 개방, ▲ 신뢰, ▲ 투명성, 협력, 개발, ▲ 통신 등 관련 조항으로 구성
  - \* 상세내용은 <별첨> WTO 전자상거래협정 팩트시트 참고
- (경과)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98년부터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의제를 논의
  - '98.5월, 각료회의(MC-2)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 채택, 전자상거래 작업계획 마련 및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의 한시적 유지 결정\*
    - \* 이후 각료회의마다 매회 다음 회의까지 모라토리엄 연장에 합의하여 효력 연장 중
  - '17년 각료회의(MC-11)에서 71개국 각료들은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을 위한 탐색적 논의(exploratory work)를 개시하는 공동성명 채택
    - \* 복수국간 협상방식을 활용한 JSI(Joint Statement Initiative) 출범
  - '19.1월 다보스 포럼 계기 美·日·EU 등 76개국은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상을 개시한다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채택
  - '19.5월, 호·싱·일을 공동의장국으로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 개시, '24.7월 안정화된 협정문(stabilized text) 도출(실질타결)
    - \* 협상참여 91개국 중 韓·日·싱·EU·中 등 72개국 지지, 美·브라질 등 일부국 보류 입장
- (법적 편입) '25년에 WTO 법적 편입 시도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
  - \* WTO 협정에 편입시키려면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 필요
  - (임시 이행) 법적 편입 지연에 따라 협정의 조속한 이행 방안 논의 → WTO 법적 편입 전까지 임시 이행 추진(법적 편입 병행 추진)
    - \* 45개국 수락서 기탁시 발효
- (기대효과) ▲ 우리 기업의 디지털무역 비용 절감 및 글로벌 시장 접근 개선, ▲ 디지털 서비스·콘텐츠 수출 확대, ▲ 디지털무역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전자상거래 원활화

- (전자 거래 체계) 전자 거래 및 과정을 인정하는 법적 체계 채택 장려, 전자선하증권 등 전자 양도성 기록의 법적 이용 및 인정 장려
- (전자 송장) 전자 송장의 법적 효력 인정(법령·규정상 예외 허용), 당사국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 등
- (전자 서명)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 인정, 전자 서명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력 장려
- (전자 인증) 당사국간 상호운용 가능한 전자 인증 원활화
- (전자 계약) 전자 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법령·규정상 예외 허용) → 기업·소비자의 비용 감소,
- (종이서류없는 무역)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에 대해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 거래비용 절감, 시간 단축
- (단일 창구) 수입·수출·통과에 필요한 전자 무역행정문서의 전자적 제출을 단일창구에서 가능하도록 허용 → 절차 간소화, 비용 감소
- (전자 결제) 전자결제 관련 승인·허가 등 공개·신속 결정 노력,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도입, 투명성 제고 등

□ 개방 및 전자상거래

- (전자적 전송 무관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미부과, 5년후 재검토 → 디지털경제 참여하는 기업의 교역에 확실성 제공
- (정부 공개 데이터) 정부 정보에 대중의 접근 촉진 → 경제·사회적 발전, 경쟁 및 혁신 촉진
- (인터넷 이용 및 접근)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의 접근 및 이용의 중요성 인정

## □ 신뢰 및 전자상거래

- (온라인소비자 보호) 사기·기만적 행위로부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 마련, 소비자 구제절차 제공 등
- (스팸메시지) 수신자 사전 동의 등 스팸 메시지 규제 채택·유지, 구제절차 제공, 스팸 메시지 관련 국제협력 노력 등
-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 체계 도입, 국가간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호환성 장려 등  
→ 디지털 무역에서 기업·소비자 신뢰 제고
- (사이버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 촉진, 국가기관 역량 개발 등

## □ 투명성, 협력 및 개발

- (협력) 전자상거래 참여자의 혜택을 위해 전자상거래의 접근·이용 촉진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교환 등 협력 노력, 접촉선 지정 등
- (개발) 포용은 전자상거래협정의 핵심으로 개도국·최빈개도국들에 대해 이행기간 부여, 기술지원, 능력배양 등 다각적 지원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은 협정상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조항 이행을 위해 5년 이내 이행기간(implementation period) 설정 가능(추가 2년 연장 가능)

## □ 통신

- 기존의 WTO 협정상 통신서비스 의무·약속을 토대로 통신규제기관의 기능, 주파수 할당 관련 절차 등 규정

## □ 제도 및 종결 조항

- 전자상거래협정의 주기적 검토, 현 전자상거래협정에 미포함된 이슈(예: 국경간 데이터 흐름, 소스코드 등)에 대한 향후 협상 가능성 인정